

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6월 21일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1.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직급(직류)	선발예정 인원	근무예정지
운전서기보(운전)	1명	중부지방고용노동청 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)

* 유의사항: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타 기관 전보가 제한됨

2. 관련 근거법령 등

-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6905호, 2020.1.29.)
-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3.10.)
-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30200호, 2019.11.5.)
-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예규, 2020.3.26.)

3. 담당 직무설명(NCS* 기반) *국가직무능력표준

임용예정기관명		중부지방고용노동청(인천광역시 미추홀구)		
선발예정인원(명)		1명		
NCS 분류 체계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	09. 운전·운송	01. 자동차운전·운송	01. 자동차운전·운송	01.여객운송
주요 업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*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상태 점검(안전 및 청결) 등 ■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업무(전산장비 관리, 사회복지요원 관리 등) 		
필요 역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■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, 조정능력 ■ (직렬별 역량) 관찰력, 자기관리, 준법의지, 대인관계, 기술적 전문지식 등 		
필요 지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로교통 법규,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■ 차량 사전 정비에 관한 지식(오일 교환주기, 누유/누수 가능 부위, 배터리 용량,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등) ■ 응급조치 및 비상상황 행동요령 		
응시 자격 요건	※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			
	자격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*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,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		
우대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■ 무사고 운전근무경력(2년 이상,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) *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경력 산정 제외 ■ 자동차 정비·검사관련 자격증 소지자(기능사 이상) ■ 정보화분야 자격증 소지자 ■ 교통법규 준수, 운전면허 별점이 없는 자 		
가점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사능력검정 4급 이상 		

* 자격요건은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되, 우대요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

4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(최종시험<면접> 예정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, 같은 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결 격 사 유

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(개정사항 '19. 4. 17. 시행)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
* 복수국적자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

○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

나. 응시자격 요건

응시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*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(면허정지나,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)
<p>※ 우대요건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전직 근무경력(최대 5년까지 근무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) - 무사고 운전경력(최근 10년간, 2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,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) - 교통법규준수(최근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운전면허 별점당 감점 배점) - 자동차 정비·검사 관련 자격증(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별 차등 배점) 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(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 및 종류별 차등 배점) - 봉사활동 실적(시간당 차등 배점) <p>※ 가산요건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(1급 5점, 2급 4점, 3급 3점, 4급 2점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근무경력의 의미)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, 외국의 정부기관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 경력을 의미 * 군 운전경력도 인정 가능(단, 경력기간 및 업무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) ▪ (경력 계산)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▪ (경력인정 예외)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(전임근무의 경우 전부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 ▪ (경력인정 요건)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(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),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운전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*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* 폐업회사인 경우,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사실 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, 운전업무 근무경력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 경우에 인정 ▪ (자동차 정비·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)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, 자동차검사기사, 자동차검사산업기사, 자동차검사기능사 ▪ 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)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·2급(컴퓨터활용능력 1, 2급 모두 소지 시 1개만 인정)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 1급 	

* **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(1차) 단계에서만 적용됨**

5. 시험 방법 [서류전형 → 실기시험 →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]

- **서류전형:**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
 -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미만인 경우 3배수, 5배수 이상 7배수 미만인 경우 5배수, 7배수 이상인 경우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
 -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

(평정요소) ①자기소개서/직무수행계획서 ②운전직 근무경력(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 감점), ③무사고 운전경력, ④자동차 정비·검사 자격증, ⑤통신·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, ⑥봉사활동, ⑦한국사능력검정시험(가점)

- **실기시험:**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아래 7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 -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
 -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미만인 경우 전원 합격자로 결정(단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함)
 -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“상”의 개수가 같을 경우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
 -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

(평정요소) ①출발 및 운전자세 ②제동 및 정지 ③가속 및 속도유지 ④조향 및 차체감각 ⑤진로변경 ⑥통행구분 ⑦교차로 통행

- **면접시험:**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아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
(평정요소)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-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“상”의 개수가 같을 경우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
6. 시험 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원서접수	2021. 6. 30.(수) 09:00 ~ 2021. 7. 2.(금) 18:00	-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* 방문 및 우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공고	2021. 7. 19.(월)	- 나라일터,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
실기시험	2021. 7. 27.(화)	- 시험장소 별도 안내
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2021. 7. 29.(목)	- 나라일터,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
면접시험	2021. 8. 5.(목)	- 시험장소 별도 안내
최종 합격자 발표	2021. 8. 20.(금)	- 나라일터,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

*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7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일시 및 시간: 2021. 6. 30.(수) ~ 7. 2.(금) 09:00 ~ 18:00
 - * (오전) 09:00 ~ 11:00 / (오후) 14:00 ~ 18:00
 - * 위 접수시간 외 시간(11:00 ~ 14:00)에는 방문접수 불가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(온라인 접수 불가)
 - *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, 택배 및 쿠팡 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접수 및 문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(☎ 032-460-4507)
 - 주소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,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고용관리과 인사팀 “운전직 공무원 채용 담당자”
 - *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.
 - *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(SMS)로 개별 통지하며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 - *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”이라고 기재

8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
- 응시원서(서식 1호) 1부
 - * **응시수수료 5천원상당 정부수입인지(우체국구입)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(행정수수료) 첨부**
 -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첨부로 응시수수료 대체
 - *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(서식 2, 3, 4호) 각 1부
 - 이력서상의 실무 경력은 상세하게 기재하되, **기재된 경력 사항은 증빙 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**됨을 유의
 -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각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
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서식 6호) 1부(서명 필수)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
- 운전경력증명서 1부(관할 경찰서 민원실 발급)
 -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 「전체경력」으로 발행
 - 「전체경력」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(교통법규위반 건수 및 운전면허 별점) 각각 “최하점수” 처리 예정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운전직 경력(재직) 증명서(서식 5호)
 - 재직기간, 직위 또는 직급, 담당업무,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, 발급자, 발급기관(연락처 포함)을 반드시 기재
 -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(년-월-일), 소속 및 직위(직급),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, 전임 및 상근여부, 발급자(날인 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), 발급기관(직인)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
 - * 위 사항이 미기재 또는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주민등록 초본 1부(남성일 경우 병역사항 기재, 여성일 경우 미제출)
- 기타 증빙자료(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인정범위 참조)
 -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 -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·시행) 등급 인정서 사본
 - * 증빙서류는 사본으로도 제출가능하며 가급적 **최근(6개월 이내)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** 하나, 부득이한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

- ✓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를 표지로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
- ✓ ‘이력서, 자기소개서’는 한글파일로 작성
- ✓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

9. 임용예정일, 보수관련 사항

- 임용 예정일 : 2021. 8. 30.(월) (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- 보수 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

10. 기타 유의사항

-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**임용유예** 되지 않습니다.
- 별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
-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,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**응시자의 책임**이 되므로,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고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. (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)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**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경력검증**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*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고, 소득금액 증명을 받는 절차가 있음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원본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을 원하실 경우 서식7호 응시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(inmind89@korea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